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정 남 순**

<목차>

- I. 들어가며
- II. 석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한계
- III.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 IV. 외국의 사례
- V. 마치며

I. 들어가며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 수는 총 65건이다¹⁾. 해마다 대략 7건 정도의 석면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보면 석면 피해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점,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석면사용량에 영향을 받는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해발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1940년경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 석면 사용량은 대략 650,785톤으로 대략 170톤당 중피종에 의한 사망이 1건 정도 발생하고 중피종과 석면 폐암의 발생비율이 1:2정도라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임에 비추어 볼 때

* 이 글은 2008. 2. 1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가 주최한 『환경성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의 법적문제와 과제』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1) 석면 노출 관련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향후 국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²⁾.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주로 직업적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어 왔을 뿐 산재가 아닌 비직업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한차례도 인정된 바 없다. 그러다가 최근 처음으로 비직업적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석면피해구제는 소송을 통한 구제로 충분한다. 우선 현행법제하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석면피해소송사례를 통해 그 한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보다 먼저 석면문제를 겪었던 미국과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석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한계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직업적 노출에 의한 피해와 비직업적 노출에 의한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구분의 실익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이다. 산재의 경우 산재심의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한 보다 간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산재가 아닌 경우 법원을 통한 개별적인 구제절차를 받게 됨으로써 심적 물적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석면사용량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피해발생은 대략 2010년 경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석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산업재해보상법

직업적 노출로 인하여 석면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업무상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족하고 사용자는 과실여부는 불문한다. 산재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①고의·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고의·과실과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비직업적 노출 피해자 모두 가능하다. 비직업적 노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예컨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석면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 758조).

제조사를 포함한 석면관련취급 사업장의 사용자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을 적절히 보호할 의무 있고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생산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배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³⁾.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³⁾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참조.

이 경우 국가 등의 책임은 규제, 감독의무 또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그 의무나 권한을 충분히 행사지 아니하거나(해태), 아예 행사하지 않았다(부작위)점에 근거한다⁴⁾.

(3) 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석면 함유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물 자체에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손해와 결함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결함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제조결함, 설계결함, 표시결함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⁵⁾.

대법원은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함의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합리적인’ 등의 의미는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⁶⁾.

-
- 4) 예외적인 상황에서 행정권의 불행사로 발생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판결
- 5) 결함의 정의와 표시상의 결함 등 구체적 결함의 유형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당해 제조물의 특성, 유통기간, 일반적인 사용방법, 제조물의 사용에 관한 설명지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정도, 위험 회피의 가능성, 어린이, 장애인 등 위험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안전설계와 경고의 채택여부 등으로 구체화해서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다. 강창경,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경제법연구 제6권 2호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고 있어 석면에 대한 규제가 없었거나 석면이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피해구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활용도가 낮고 기업의 책임의식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는 제조물 결함피해의 대부분은 소비자상담기관에서의 중재로 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2. 한계

(1) 과실의 입증 문제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하지 않는 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나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거나 작업환경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다룰 수 있게된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6)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어떤 제품이 비합리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판단은 제품의 효용성과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제품 판매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제조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한 미국보렐사건 판결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험성을 내포한 제품의 경우 그 위험성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간명해 보인다.

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2006

소송사례에서 사용자의 주요항변이기도 하다. 각종 행정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⁸⁾(사례 2의 경우 석면이 노출허용기준이내여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어졌다)

“피고공장이 그 공장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지는 하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기술적인 설비를 통한 것이거나 제품자체의 잠재적 위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사고의 특성상 전통적인 과실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⁹⁾

(2)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

환경피해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장애물 중의 하나는 역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⁰⁾. 석면으로 인한 피해 질환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석면이 이들 질환의 유일한 원인이라거나 중대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석면으로 발병할

8) 우리나라 석면관련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박균성, 석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석면피해소송-미국법과 그 도입을 중심으로, 국제법학연구(제3호)를 참조하라. 그 밖에 석면철거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관련규정이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을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1982. 10부터이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경우는 1998년 1월에 이르러서였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무과실책임원칙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장등, 사업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의 개념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의 여전히 존재한다. 김홍균, 환경법(2007).

10)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인과관계는 통상적인 개별행위와는 달리 행위자체의 내부적인 복잡성고 누적적 손해, 격지손해 등 특이한 인과관계 확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지태 이순자 공저, 환경법(2005)

수 있는 폐암을 예로 들면, 그 발생원인은 유해물질에의 노출이라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흡연, 가족력 등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사실상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담뱃갑의 경구문구를 보라) 구체적인 개인이 담배로 인하여 폐암에 걸렸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¹¹⁾).

인과관계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현실적 수용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¹²⁾. 우리 법원은 양어장사건에서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개연성이론 받아들여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다¹³⁾.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그 제품에

11) 현대 의학은 암에 관한 인과론을 ① 다요인설(**multifactorial etiology**)과 ② 다결과설(**multiplicity of outcome**)로 이해하고 있다.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과 같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요인설이고, 흡연은 폐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폐기종, 방광암 등 다양한 인체기관에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다결과설이다. 폐암의 경우 주로 흡연이 강력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능한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인구집단 혹은 특정 개인의 암 발생 확률을 변화시킨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77378판결)

12) 이에 반해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법률로 정한 산업설비로 인해 야기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마련되어 있다.

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의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고,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하여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를 받아들이고 있다¹⁴⁾. 이외에도 신개연성설, 일응의 추정설, 위험영역설, 역학적 인과관계 이론 등이 인과관계 입증 완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¹⁵⁾. 그러나 실제 개연성 이론이나 제조물책임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가 많지 않아 피해자들이 느끼는 입증책임을 무거운 여전히 가볍지 않다¹⁶⁾.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석면에의 노출여부 입증도 문제이다. 직업적 노출의 경우 석면에의 노출 여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유해측정 인자로 석면을

1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5)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임치용, 환경법의 제 문제(上)

16)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입증책임완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77378판결

포함하고 있어 석면 노출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면이 직업환경유해측정 대상이 된 것은 1982. 10. 이후부터이어서 그 이전의 경우 작업장의 석면노출여부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비직업적 노출 피해,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하철 이용승객의 경우 석면에 노출경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경우라면 어떤 작업장의 석면노출로 인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석면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렵사리 피해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노출 정도를 밝히는 것 역시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3) 가해자 불명 또는 부재의 문제

석면노출의 경로가 다양한 경우 과연 누구를 상대로 피해를 청구하여야 하는지도 쉽지 않다. 피해는 분명 있는데 가해자가 불명하여 사실상 가해자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석면의 특성상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에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이미 피고인 석면제조업체나 석면취급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장이 현재하는 경우에도 가해시설의 운영자에게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렵게 되는데, 대부분의 석면관련 사업장이 영세한 국내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경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소멸시효의 문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며(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다(민법 제162

조, 제166조). 그러므로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한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 발병원인이 석면인지 여부를 알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석면이 거의 유일한 원인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그 확정 진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⁷⁾. 악성중피종 이외의 석면관련 질환 등도 마찬가지이다.

Ⅲ.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소송은 작업환경에서의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출인정 여부, 인과관계인정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 <사례 1>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례이다¹⁸⁾.

폐암발병과 석면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사실 ②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3. 15.경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 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사망 후 작업장 측정결과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 ④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작업과정에서 유리규산 분진이

17) 석면피해자 구제 및 지원방안 연구, 환경부(2008)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발생할 수 있는 점 ⑥ 망인은 전사지 소성로공정으로 작업장을 옮긴 이후 퇴사 전까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던 사실, ⑦ 작업장의 환경이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2. <사례 2>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03. 1. 29. 사망한 사례이다¹⁹⁾.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석면에의 노출 및 도달 여부였다²⁰⁾. 법원은 ①2001년, 2002년에 서울 지하철 역사 중 냉방 공사 중 진행된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 있는 섬유상 물질의 90% 이상이 석면이거나, 그 가스켓에서 적게는 10~15%, 많게

19)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517 판결 【요양불충인처분취소】

20) 지하철 역무원이었던 망인은 어떤 경위로 석면에 노출된 것일까? 피해자가 잠실역에 근무하던 무렵인 1987. 5. 18.부터 1988. 7. 30. 인근 롯데월드의 지하 1층 입구와 지하역사 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역무실과 매표소를 이전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잠실역 해당 부분의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환기실 안에 있던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덕트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이 뜯어지게 되었다. 당시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는 30~4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가 근무하던 당시의 잠실역사에 쓰인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비슷한 정도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②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정도에 비추어 1980년대 역사 공사시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그러하나 자료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다.

석면과 폐암발병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업무 내용,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가 인정하였다.

3. <사례 3>

백석면을 이용하여 석면사(石綿絲) 제조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퇴사 후 약 26년이 지난 뒤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의 사례이다. 앞서 본 사례들이 산재와 관련한 소송이었던 것에 비해 이 사안은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직업적 노출 피해자가 제기한 첫 민사소송사례이다²¹⁾.

사용자측은 ①안전배려의무 판단은 현재의 기준이 아닌 1976~1978년 당시의 국내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② 1976~1978년 당시 국내에는 석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나 피해사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회사로서는 석면의 중대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²⁾.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에게는

21)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5가단51553판결

22) 당시 작업장은 정방기에 석면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계마다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의 몇 군데에만 환풍기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에는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하는 상황이었는에도 방지마스크는 지급되기 했지만 필터는 교환되지 않았고, 장갑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일반천으로 만든 작업복이 지급되었을 뿐이었다.

① 작업장에 비산된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고 ②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및 방호장갑, 방호작업복을 지급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③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그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이 재직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용자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① 퇴사 후 30년 경과하여 발병하였으므로 발병원인이 피고회사 근로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악성 중피종이 발병은 환자자신의 신체적 소인의 영향이라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점, ③ 회사에서 생산한 석면은 유해한 청석면이 아니라 유해하지 않은 백석면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사용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인과관계인정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다른 질병과 달리 악성중피종의 경우는 90%이상이 석면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된 이상 악성중피종이 석면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검토한 사례들에서는 모두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되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사례들이 향후 석면피해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의미한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에서는 장기간의 석면노출을 중요하게 보아 피해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000이 장기간 흡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000의 폐암 발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담배소송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석면노출만으로 폐암 발생여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²³⁾.

<사례 2>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와 같이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내용,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하였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상 ①석면은 직경이 0.02~0.03 μm 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②망인은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한편 망인의 폐암인 선암은 흡연과 전혀 관계없지는 않지만 폐암 가운데 비교적 흡연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제시된 하루에 10~19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편평상피세포암은 12.2배, 소세포암은 5.6배, 선암은 2.7배 높다는 것이 기존 연구결과는 선암의 경우에도 흡연이 비흡연의 경우보다 암발생율에서 2.5배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역시 상반된 결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사례들은 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23)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아마도 위 사례가 장기간의 직업적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의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에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폐암이 아니더라도 석면에 10년이상 노출된 경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이 노출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여전히 인과관계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힘겹게 다투어야만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허용기준치 이내의 석면노출이면 책임이 없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례 1> 판결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경우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사실이 곧 무해하다는 의미는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인지 여부는 책임인정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²⁴⁾.

IV.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1) 석면소송사례

미국에서는 2000년 말까지 60만여 명의 원고들이 6000개 이상의 회사를 상대로 석면 피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 중 56개 이상의 회사가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최근의 석면 관련소송들은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장래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석면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석면의 대량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광범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제조물책임에서 엄격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산재보험금액은 보험회사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지급보다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산재보상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석면소송으로 알려진 사건으로는 *Borel v. Fibreboard Paper*

²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석면의 노출허용기준은 0.1개/m³이다.

Products Corp.(493 F. 2d 1076) 사건, Beshada v. Johns-Manville Prods.(447 A.2d 539) 사건(1982), *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538 U.S. 135)사건 (2003) 등을 들 수 있다.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493 F. 2d 1076) 사건(1973)은 33년간 단열보온재 시공 작업자였던 원고 보렐(Borel)이 1969년 1월 석면침착증(Asbestosis) 진단 후 1970년 2월 중피종으로 밝혀지자 6개 석면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²⁵⁾. 법원은 석면제조업자들이 사용자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은 경고결함에 해당하고, 석면제조업자들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품의 위험에 대한 시험과 연구 분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⁶⁾.

Beshada v. Johns-Manville Prods.(447 A.2d 539) 사건(1982)에서는 제조회사가 비록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것을 경고결함으로 판단하였다²⁷⁾. 제조회사는 제품제조당시 석면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과학기술항변(state-of-the-art defense)을 하였지만 과학기술항변은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 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여 엄격책임

25) 보렐에게 인정된 보상액은 58,534달러였다. 총 피해액은 79,436달러로 인정되었으나 재판전 4개회사와 화해한 20,902달러가 공제되었다.

26) 미국에서 최초의 석면폐증 환자는 1924 석면사 제조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하였고 공식적인 보상청구는 1927년에 있었다고 한다. 1930년대 이미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1947 석면노출기준에 대한 연구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석면노출기준을 규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실제 1960년대 총사망자의 7%가 석면폐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27)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은 것을 경고결함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후 석면제조회사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와 같은 비판이 사실상 수그러들게 되었다고 한다. 하중선 변호사, 법률신문 제3146호

을 인정하였다. 소비자들은 위험성을 경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석면제품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방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중히 고려된 것이다.

최근에는 석면침착증(Asbestosis)을 앓고 있는 철도회사 직원들이 향후 폐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증가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까지 인정되고 있다²⁸⁾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인정은 질병이 실제로 발병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질병발생의 우려에 대한 보상이 실제 질병에 걸렸을 때 분리 보상이 가능한 경우, 질병에 대한 우려가 통상 일반인이 노출되는 위험과 차이가 없는 위험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및 구제법의 도입논의

보렐판결이후 사용자 및 제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이런 와중에 1982년 미국에서 가장 큰 석면관련 제조사인 Johns-Manville사가 소송급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수십개의 석면회사들의 파산신청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석면제조회사들은 석면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원고들과 화해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면소송기구(ACF: The Asbestos Claims Facility)와 석면구제센터(CCR: The Center

²⁸⁾ <http://international.westlaw.com>.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538 U.S. 135)

원고가 현재의 질병이 실제 암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 및 암에 대한 공포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모두 입증해야만 한다고 피고가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리적 고통을 그야말로 순전한 감정적인 고통과 실제 질병을 가진 사람이 겪는 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석면폐에 걸린 원고들의 암에 대한 우려는 후자의 고통에 해당하고, 석면폐증 환자의 10%가 악성종양으로 사망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for Claims Resolution)를 조직하였다²⁹⁾.

그러나 석면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점점 확대되어 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02년 상원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석면소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시도를 시작하여 석면구제법안(S.852)이 상원에 제출되었다. 위 석면구제법안의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건강피해와 석면노출의 정도에 따라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피해보상, 보험회사와 석면과산기금으로 구성된 석면피해청구 해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보상액 지급업무를 위해 노동부 내에 석면질병보상국(Office of Asbestos Disease Compensation)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보와 법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석면청구자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 일본의 경우

(1) 소송사례

일본의 경우도 주로 직업적 노출로 인한 피해가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직업적 노출 피해 소송사례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보타쇼크이후 소송이 증가하였고, 피고도 석면제조사뿐 아니라 건축현장, 철도회사 전력회사 운수회사 등, 석면제품을 사용한 기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³⁰⁾. 주민피해의 경우 소송으로 분쟁이 해결되기 보다는 석면관련 제품 제조업체들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른 보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인 니치아스의 경우 1971년 이전 공장 주변 400미터이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¹⁾.

29) 김민동, 미국의 석면피해구제법령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5권 제2호(2008. 10)

30) 일본의 석면소송, 변호사 位田浩, 한일변호사 간담회(2009. 1. 16.)

31) 197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해 특정화학물질 등 장애 예방규칙이 공포되어 석면이 통상의 작업시에 계속적 반복적 폭로되는 경우 만성

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여부 및 석면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 점은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다. 고압석면파이프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부친이 집에 가져온 작업복과 마스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이다. 회사는 피해자의 폐암발병원인 및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석면이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이 악성중피종인 사실, 가족이 석면을 다루는 노동자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법원은 망인이 부친의 작업복과 마스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량은 극히 미량이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석면노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과실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가정적 판단을 통해 회사에게는 피용자가 마스크나 작업복을 집에 가져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피해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³³⁾.

호텔의 기계실 보일러실 등 기계실에 근무하던 자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지정되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 32) 裁判年月日 平成17年 1月20日 裁判所名 東京高裁 裁判区分 判決事件番号 平16(ネ)2283号. 피해자는 은행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은 있으나 석면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없고 어릴 적 아버지가 가지고 온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놀거나 작업복에 접촉하곤 했다고 한다.
- 33) 유족들은 1955년 무렵까지의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석면관련 질환의 연구가 이루어져 석면의 인체에의 악영향이 널리 보고되었고 회사는 해외 기업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어 석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석면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근로자에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여 마스크나 작업복을 집에 가져감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해 가족의 건강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일본에서는 1983년에야 석면 공장 부근 주민에게 악성 중피종이 처음 발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학술 논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피고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석면 전문기업이 아닌 피고는 1987년 무렵까지 석면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석면노출에 따른 안전배려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³⁴⁾.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시설 또는 기구 등의 설치 관리 또는 피고용자가 행하는 직무의 관리함에 있어 생명 신체 및 건강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안전배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발생한 분진이 작업현장에 체류하는 것이 없도록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②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작업시 실제로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며 ③분진의 발생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작업전과 작업도중 적절한 청소나 살수하도록 종업원을 지도 감독하며 ④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정기적에 실시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⑤ 석면이 열화하거나 비산하는 경우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³⁵⁾.

(2) 구보타 쇼크와 구제법 제정

석면피해자들이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즈음, 2005년 6월 29일 석면을 함유한 수로 배관 등을 생산하는 구보타(Kubota)사가 공장 인근 지역 주민 3명에서 석면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표하게 된다. 2005년 발표당시 79명이 이미 중피종으로 사망했고 527명의 근로자 중 140명(27퍼센트)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³⁶⁾.

34)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원고측은 석면이 유해물질로 분류한 특정 화학물질 등 장애 예방규칙(1971. 4. 28 공포)이 공포된 즈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음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위 특화칙은 석면제조업자가 아닌 호텔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1988년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5) 裁判年月日 平成20年 8月29日 裁判所名 札幌高裁 裁判区分 判決, 事件番号 平19(ネ)99号.

36) 구보타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최종적으로 2500만~4600만 엔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함께 사는 길(2007년 4월호)

구보타 사건은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구보타 쇼크를 계기로 구제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2006년 2월에 구제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석면구제법은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를 입은 자와 그의 유족(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으로서 노재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2008년 현재 기준 총 2,817건의 보상신청이 있었고 그 중 1,441건에 대하여 구제결정이 내려졌다³⁷⁾.

V. 마치며

최근 충남지역의 석면광산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X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15명중 절반이 넘는 110명이 석면폐로 나타났고, CT정밀검사대상 33명의 94%인 31명이 석면폐와 흉막반으로 확인되었다. 광산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조사대상지역 확대되는 경우 향후 석면 피해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피해소송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이들 석면피해를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피해자는 석면노출의 원인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의 면책주장도 방어해야 한다. 설사 피해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해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현실적인 여러 난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반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지 여부는 너무나도 불확실하다. 석면은 그자체로 발암물질이다. 위험한 물질이지만 여러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용이 용인되었을 뿐이다. 사회적 필요

37)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8)

라는 효용의 반대급부로 발생한 비용(피해)이 있다면 이는 그간 효용의 이익을 누려온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석면피해구제를 개별피해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석면구제법 논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할 때다.

투고일 2009. 2.17., 심사완료일 2009. 2.20., 게재확정일 2009. 2.25.

참고자료

- 강창경,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경제법연구 제6권 2호
- 김민동, 석면의 법적 규제와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8. 10)
- 박균성, 석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석면피해소송-미국법과 그 도입을
중심으로, 국제법학연구(제3호)
- 하중선 변호사, 법률신문 제3146호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 노출 관련 근로자의 직업
성 질환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2008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2006
- 환경부, 석면피해자 구제 및 지원방안 연구, 2008
- 한국법제연구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2008
- 位田浩, 일본의 석면소송, 한일변호사 간담회 자료(2009. 1. 16.)
- 환경운동연합, 함께 사는 길, 2007. 4.
- 김홍균, 환경법(2007).
- 유지태 이순자 공저, 환경법(2005)
- 임치용,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환경법의 제 문제(上),
법원도서관, 2005

<Abstract>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litigations related to asbestos injuries and its problems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Jeong, Nam-Soon

Recently many people who lived near asbestos mining i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were found to have asbestos-related diseases. The major use of asbestos started in the 1960s, however asbestos-related diseases may have not appeared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exposure has occurred and the number of victim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suits are expected to follow.

Under the tort system, victims bear the burden of identifying a specific product, and proving that asbestos caused their illness. Victims also fac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claimant's exposure, resulting in a lag of several years between the filing and resolution of a suit. Furthermore, suits by impaired claimants have bankrupted companies.

In America and Japan,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the current tort system does not fairly compensate asbestos victims. As a result, the bill was enacted and made into a bill in Japan(Introduced in the U. S. Senate). The purposes is to ensure that people who become sick, as a result of exposure to asbestos, are compensated surely, fairly, and quickly.

Our current tort system lacks the capacity to resolve the claims of asbestos victims. It is time to make a social consensus that creates an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to better resolve the claims of these victims and maintain some surveillance programs.

주제어 : 석면, 환경성 노출, 석면관련소송, 악성중피종, 불법행위법

Key-word : Asbestos, environmental exposure, litigations related to asbestos injuries, malignant mesothelioma, the tort law system.